제2676호
2019. 8. 21.

발 행 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 집 인 : 홍 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
전화 :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조 례

제1466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정정) ····· 2
[구보 제2674호(2019.08.09.)-조례1466호 오류정정사항 : 제20조 제3호 삭제]

◉ 고 시

제2019-99호 : 중구 납세자권리헌장 ····· 18
제2019-100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19
제2019-101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20

◉ 공 고

제2019-625호 :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1
제2019-627호 : 서울특별시 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5
제2019-635호 : 서울 중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공고 ····· 29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서울특별시중구

조 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8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66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서소문 역사 공원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살려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조성하여 중구를 관광 문화의 도시로 알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물”이란 이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또는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작품, 유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

2. “유물”이란 보존·전시·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 또는 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대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란 박물관 내 대관시설 이용 시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료”란 전시관에 있는 전시물을 관람하기 위해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박물관의 명칭, 위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5

3. 기 능 : 서소문 역사 공원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를 반영한 전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중구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알리고자 함

② 박물관 내 설치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문화 시설 : 상설 전시관, 기획 전시관, 기념 전당, 하늘 광장, 도서실, 강당 등

2. 편의 시설 : 카페테리아, 기념품 숍, 부설 주차장

제2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① 박물관 운영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박물관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 수립)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12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 협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위탁 운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로부터 박물관의 위탁 운영과 관련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정기적 지도점검 및 필요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시설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 일체,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설물 등을 원상회복 시키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의 이용

제9조(개관 및 휴관) 박물관 내 부설 주차장을 제외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시설 개·보수, 전시관 전시물 교체 등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휴관일

제10조(이용 시간) ① 박물관 내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기본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시설 이용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전시관 관람 목적 입장 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박물관 내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관람료) ① 상설 전시관에 대한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다만,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는 전시나 대관을 받아 전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관람료를 협의한 후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무료 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7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2.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8.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9.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 또는 시설 사용자에게도 무료 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설 이용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이용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시설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해 시설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4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박물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이용객의 변상 책임) 박물관 이용객은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의 사용

제16조(사용 허가) ① 구청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에 대해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박물관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구청장은 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 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시설 이용 신청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와 협의된 경우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 허가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자가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제18조(사용 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사유로 시설 사용 허가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시설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2. 박물관 내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박물관의 설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9조(시설 사용료) ①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표 1의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박물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20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청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구청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 감면

제5장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제21조(설치) 구청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기능)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박물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제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주요 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관계 공무원, 구의회 의원, 박물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관계 공무원
2. 구의회 의원
3. 역사·문화·공연예술·관광·전시·종교·콘텐츠 기획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 근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또는 의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 출타,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운영) 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내용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장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제28조(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① 구청장은 박물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 별표 2의 수강료 금액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 ①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납부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 신청한 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30조(수강료의 감면) 구청장은 별표 4와 같이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항목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되, 신청자에게 유리한 항목으로 한다.

제7장 부설주차장 운영

제31조(주차장 운영) ① 주차장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은 일일 주차와 월 정기 주차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월 정기 주차를 이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주차장 월 정기 신청서를 제출 후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인 정산기를 이용하여 별도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 이용요금은 별표 5와 같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내 시설 사용료 (제19조 관련)

연번	시설명	면적	1회 이용시간	금액	비고
1	교육 강당 (지하1층)	210.23㎡	반일	250,000원	
			전일	500,000원	
2	기획 전시실 (지하2층)	310.63㎡	전일	500,000원	
3	소강당 (지하2층)	112.87㎡	반일	170,000원	
			전일	250,000원	

※ 1. 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사용시간은 전일시간(09:00~18:00),
반일시간(09:00~13:00 / 14:00~18:00 선택)임

2. 1회 이용 기준시간 미만 사용한 경우 1회 이용으로 적용함.

3. 토 · 일 · 공휴일 및 야간 시간(19:00~22:00) 대관 시 대관료에 30%를 할증함.

4.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별표 2]

수 강 료 (제28조 관련)

구분	수강료	비고
일반 교육 · 체험 프로그램	1개월 50,000원 이하	프로그램 별 주 1회 내지 월 5회 기준
세미나 · 포럼 등 전문가 프로그램	강의시간, 강사료, 교재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근거하여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금액으로 선정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 (제29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강 신청자 취소 요청의 경우	강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강의 시작 전	수강료 전액
		총 강의 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강의 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강의 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강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의 시작 전	수강료 전액
		강의 시작 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강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모집 정원 미달, 강사 및 강의 장소 등 그 외의 사유로 인한 경우		강의 시작 전	수강료 전액
		강의를 할 수 없거나, 강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때	사유 발생 이후 수강료 전액 (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총 강의 시간은 강의 기간 중의 총 강의 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4]

수강료 감면기준 (제30조 관련)

유형별 구분	할인율	대상 및 내용
수급자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3급 장애인)
경로우대자	2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중구민	20%	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별표 5]

주차 이용요금 (제31조 관련)

1. 주차장 이용 요금은 아래와 같다.

가. 일일 시간 주차 : 5분당 400원을 기본료로 징수하고,
30분 초과 시 매 10분 당 1,000원으로 징수한다.

나. 월 정기주차 요금은 월 250,000원으로 한다.

2.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면제 대상

1) 공무 수행 차량

2) 시·구의원, 다른 기관 공무원, 언론기관 로고 부착차량

3) 업무 등의 방문으로 수탁체 담당부서 확인증을 소지한자의 차량

4) 그 밖에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부설 주차장 운영 내부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으로 별도 지정한 차량

나. 감면 대상

1)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 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나).「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2)「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는 100분의50을 할인한다.

3)「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 100분의50을 할인한다.

4)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50을 할인한다.

5)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부설 주차장 운영 내부 규정에 감면 대상으로 별도 지정한 차량

3. 주차 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위 “나. 감면 대상” 중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table>
<tr><td colspan="5">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td></tr>
<tr><td rowspan="3">신 청 인</td><td>단체(신청자)
주소</td><td colspan="3"></td></tr>
<tr><td>단 체 명
또는 신청자</td><td></td><td>전 화
(핸드폰)</td><td></td></tr>
<tr><td>대표자 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이용시설</td><td colspan="4"></td></tr>
<tr><td>사용기간</td><td colspan="4">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일간 / 시간)</td></tr>
<tr><td>사용목적
(변경사유)</td><td colspan="4">※ 전시회 또는 행사의 경우 전시(행사명) 기재</td></tr>
<tr><td>사 용 료</td><td colspan="4"></td></tr>
<tr><td>첨 부</td><td colspan="4">1. 행사계획서 또는 전시기본계획서 각 1부.
2. 서약서 1부.
3. 기타 입증서류 1부.</td></tr>
<tr><td rowspan="2">관람료
(전시회의 경우)</td><td>무 료</td><td colspan="3"></td></tr>
<tr><td>유 료</td><td colspan="3">※ 관람료는 전시기본계획서에 첨부</td></tr>
</table>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table>
<tr><td colspan="5">시설 사용(대관) 허가</td></tr>
<tr><td>단 체 명
또는 신청자</td><td colspan="2"></td><td>대표자성명</td><td></td></tr>
<tr><td>단체의 소재지
또는 신청자 주소</td><td colspan="2"></td><td rowspan="2">연 락 처</td><td>(사)
(자)</td></tr>
<tr><td>행사의 명칭</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4">허 가 사 항</td><td>구 분</td><td colspan="3">허 가 내 용</td></tr>
<tr><td>사용일시</td><td colspan="3"></td></tr>
<tr><td>시 설 명</td><td colspan="3"></td></tr>
<tr><td>기 타</td><td colspan="3"></td></tr>
<tr><td>허가조건 등
기 타 사 항</td><td colspan="4"></td></tr>
</table>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대관)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장

[별지 제3호 서식]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	단체명(성명)			
	주 소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담 당 자 명		이 동 전 화	
신 청 내 용	사용허가시설		사용목적	
	사용(이용)기간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납부한사용료	금 원정 (₩)			
반환신청액	금 원정 (₩)			
입 금 계 좌	은 행 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취소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 신청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성 명 : (인)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장 귀하

첨 부	1. 신분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사본 1부.

[별지 제4호 서식]

주차장 월 정기 신청서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차량소유주	
할인사항	경차 · 유공자 · 장애인 · 저공해 · 다둥이(2 자녀), 다둥이(3 자녀 이상) · 기타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할인관련 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개인정보 보호법」제 15 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 22 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 24 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에 의거, 부설주차장 월 정기 주차 관련 업무를 위한 목적만 으로 사용되며, 시설이 수집·이용하는 본인의 성명, 연락처 및 추가 할인사항을 위해 기타 할인에 관련한 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의 일반정보 및 개인정보가 주차장 신청 및 사용기간 동안 활용 될 수 있음을 동의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 동의안함 □

※ 할인과정에서 수집되게 되는 장애인등록증 등의 고유 식별 정보는 알아볼 수 없도록 마스킹 처리하여 보관합니다.

2. 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기내용의 미동의 시 주차장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파기 동의 □ 동의안함 □

3.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 21 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하여 보유목적 달성 후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 동의 □ 동의안함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 31 조 제 2 항에 따라 위 서약사항에 동의하며 월 정기 주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서소문 역사 박물관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와 관련한 규정이 필요함.

○ 서소문 역사공원이 가지는 정체성과 특수한 역사 가치를 살려 중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설치 및 기능 (제1조~제3조)

○ 제2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

- 시설 운영, 사업계획서 등 수립, 위탁 해지, 지도·감독 등 (제4조~제8조)

○ 제3장 시설의 이용

- 개관 및 휴관, 이용시간, 관람료, 무료관람 (제9조~제12조)
- 시설 이용금지, 행위 제한, 이용객 변상 책임 (제13조~제15조)

○ 제4장 시설의 사용

- 사용 허가취소·허가 제한, 시설 사용료, 감면 (제16조~제20조)

○ 제5장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해촉, 직무, 운영 (제21조~제27조)

○ 제6장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납부 및 반환, 감면 (제28조~제30조)

○ 제7장 부설주차장 운영

- 주차장 운영, 시행규칙 (제31조~제32조)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99호

중구 납세자권리헌장

지방세기본법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및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제정한 중구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100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 로 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부여기준
황학동951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18길 20	2019.08.21.	마장로18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마장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황학동955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18길 16	2019.08.21.	마장로18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마장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101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7길 37-4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72-85 외1필	2019. 8.21.	건물 말소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3길 13-3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955	2019. 8.21.	건물 말소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18길 20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953	2019. 8.21.	건물 말소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18길 22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951	2019. 8.21.	건물 말소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18길 18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955	2019. 8.21.	건물 철거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18길 18-1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953	2019. 8.21.	건물 철거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1길 18-27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951	2019. 8.21.	건물 철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625호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2016.05.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 복지서비스 제공 등이 추가되어 법 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
-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
-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

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안 제3조)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정신건강사업 수행

라. 사업 관련 사항(안 제4조)

-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사업 추진
-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과 인권보호
-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마. 운영의 위탁(안 제5조~제10조)

- 시설의 설치·운영, 시설·단체의 위탁 관련 사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사항

바. 변상책임, 준용, 이용제한 등(안 제11조~제15조)

- 시설물 회손 시 변상책임, 이용제한 대상자, 유관기관 협조사항에 관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참조: 의약과, 주소: 서울특별시 다산로39길 16(무학동), 문의전화: 02-3396-6382, FAX: 02-3396-8907, 메일: leeju@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운영능력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업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 · 유아, 아동, 청소년, 중 · 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 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6.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7.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8.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제3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 후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 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건강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 협약사항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제8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관련하여 수탁운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을 받는 경우
2. 수탁운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등 비품 등 일체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운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시설, 및 운영제반사항을 지도 감독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조사 또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또는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책임)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이용제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4조(협조사항) 동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담당자는 정신질환자의 파악 및 등록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627호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50대 정신건강검진 ·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 사업이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어 검진 대상자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검진 대상자를 확대 실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9년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추진계획에 의거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을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으로 변경 및 “50대” 삭제 (안 제명, 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제1호, 제5조)

나.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내용 변경(안 제1조, 제3조제1항) 및 추가 (안 제2조제4항)

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신설(안 제8조제3항)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신보건전문요원”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8조제3항제2호)

마. 지방자치법에 의거 “관계법령에 따라”를 “이를”로 변경(안 제11조제1항) 및 내용 삭제(안 제11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참조: 의약과, 주소: 서울특별시 다산로39길 16(무학동), 문의전화: 02-3396-6382, FAX: 02-3396-8907, 메일: leeju@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서울특별시 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중구 50대”를 “중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질환의 예방,”으로,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을 “치료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50대를 대상으로”를 ““정신건강검진·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정신건강검진·상담”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신건강증진” 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정신건강검진”을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등”으로, “수립·시행하고, 50대”를 “수립·시행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정신건강검진·상담”으로 한다.

제5조 중 정신건강검진대상은 “50대 주민”을 정신건강검진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중구에 둔 자”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신건강전문요원

제10조 중 “수행 할”을 “수행할”로, “예산범위”를 “예산 범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계법령에 따라”를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50대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질환의 예방, -- 치료 등----------.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50대를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1. "정신건강검진 · 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 정신건강검진 · 상담----------.
<신 설>	4. “정신건강증진” 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 · 상담, 정신질환의 예방 ·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50대 정신건강 및 상담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등― 수립 · 시행하고,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	1. 정신건강검진 · 상담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대상은 50대 주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자로,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중구에 둔 자 ----------.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①·② (생 략)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신보건전문요원	2. 정신건강전문요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 ------- 수행할 ------- 예산 범위 ----------.
제11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검진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허위청구에 의하여 검진기관에 검진비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환수조치 등) ① ---------- 이를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635호

서울 중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공고

서울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2019년 중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제5항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개 요

- 계 획 명 : 서울 중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 계획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9년, 목표연도 2023년
  · 공간적 범위 : 중구 전역 도시공간, 공공디자인

나. 주요내용

- 중구 공공디자인 기초조사
- 중장기적인 중구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및 전략구상
-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중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중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공공공간, 공공건축,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 전략 세부계획 및 실행체계 수립

다. 중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세부내용

- 서울시 중구청 홈페이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자료실 참조

라. 공고기간 : 2019. 8. 21. ~ 2019. 9. 4. (14일간)

마. 관계자료 :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963)에 비치